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의 분장사무에 신성장조달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신성장조달기능 강화를 위하여 구매사업국에 신성장조달기획관을 신설하면서 한시조직인 혁신조달기획관은 폐지하며, 구매사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혁신조달운영과의 명칭을 신성장관로지원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혁신조달운영과에 두는 정원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혁신지향 공공조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구매사업국의 1개 과를 폐지하고, 인력 1명(4급 1명)의 직급을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며, 조달관리국과 기술서비스국의 명칭을 각각 공정조달국과 기술서비스국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조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6. 0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조달관리국”과 “신기술서비스국”을 각각 “공정조달국”
과 “기술서비스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조달관리국)”을 “(공정조달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달관리국장”을 각각 “공정조달국장”으로 한
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구매사업국) ① 구매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
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구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이하 이 항에서 “국내물품”이
라 한다)의 종합구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내물품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국내물품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물품 계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국내물품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 · 개선
 6. 가격관리체계 구축 · 운영
 7. 거래실례가격의 조사 · 통보
 8. 국내물품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 · 관리 및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내물품 계약과 관련된 사항
 10. 혁신조달과 관련된 사항
 1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군수품(이하 “군수품”이라 한다)의 종합구매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 군수품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수품 계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군 부식용 농 · 수 · 축산물의 가격산정
 15. 군수품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 · 개선
 16. 군수품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 · 관리와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7. 신성장조달과 관련된 사항
- 제10조의2의 제목 “(신기술서비스국)”을 “(기술서비스국)”으로 한다.
- 제10조의2제1항 중 “신기술서비스국장”을 “기술서비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기술서비스국장”을 “기술서비스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역의 종합구매계획 수립 · 조정
 2. 용역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공공구매 촉진정책 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용역 계약과 관련된 사항
- 제20조제2항 후단 중 “36명”을 “35명”으로 한다.
-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4조(신성장판로지원과)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구매사업국장 밑에 신성장판로지원과를 둔다.
- ② 신성장판로지원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 ③ 신성장판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장터 운영 및 관리
 2. 혁신제품 시범구매 운영 및 계약관리
 3. 신성장조달제품 판로지원
- ④ 신성장판로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제2항 본문 중 “2023년 6월 30일”을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 별표 2 중 총계 “534”를 “535”로 하고, 일반직 계 “533”을 “53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7”을 “8”로 한다.
- 별표 5 제1호를 삭제한다.
- 별표 6 제2호 중 “2023년 6월 30일”을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4조(하부조직) ① 조달청에 운영지원과·조달관리국·구매사업국·신기술서비스국·시설사업국 및 공공물자국을 둔다. ②·③ (생략)	제4조(하부조직) ① ----- ----- <u>공정조달국</u> ----- ----- <u>기술서비스국</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조달관리국) ① 조달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달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제8조(공정조달국) ① <u>공정조달국장</u> ----- -----. ② <u>공정조달국장</u> ----- -----. 1. ~ 16. (현행과 같음)
제10조(구매사업국) ① 구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구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이하 이 항에서 “국내 물품”이라 한다)의 종합구매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10조(구매사업국) ① <u>구매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u> ② <u>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2. 국내물품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국내물품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물품 계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국내물품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6. 가격관리체계 구축·운영
7. 거래실례가격의 조사·통보
8. 국내물품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내물품 계약과 관련된 사항
10. 혁신조달과 관련된 사항
1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군수품(이하 “군수품”이라 한다)의 종합구매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 군수품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수품 계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의 가격산정

15. 군수품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16. 군수품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와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 <신 설>

- ③ 구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이하 이 항에서 “국내물품”이라 한다)의 종합구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내물품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국내물품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물품 계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국내물품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6. 가격관리체계 구축·운영
 7. 거래실례가격의 조사·통보
 8. 국내물품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내물품 계약과 관련된 사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구매사업국장 밑에 혁신조달기획관을 두고, 구매사업국에 혁신조달운영과를 둔다.	----- ----- --- 2025년 6월 30일----- ----- ----- 신성장판로 지원과를 둔다.
② 혁신조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신성장판로지원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혁신조달기획관은 제10조제2항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구매사업국장을 보좌한다.	③ 신성장판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장터 운영 및 관리
	2. 혁신제품 시범구매 운영 및 계약관리
	3. 신성장조달제품 판로지원
④ 혁신조달운영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신성장판로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혁신조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혁신장터 운영 및 관리	
2. 혁신제품 시범구매 운영 및 계약관리	
⑥ 혁신조달기획관 및 혁신조달운영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삭 제>

별표 5와 같다.	<삭 제>
⑦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한시정원) ① (생 략)	제26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혁신지향 공공조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달청에 둔다.	② ----- ----- ----- 2025년 6월 30일-----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조달청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34</u>	<u>535</u>	+1
·	·	·	
·	·	·	
일반직 계	<u>533</u>	<u>534</u>	+1
고위공무원단	<u>7</u>	<u>8</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2